

# REGULATION

##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

관련 항목: ABA, ABC, ABC-RA, ACA, ACD, ACG, ACG-RA, ACG-RB, DNA,

ECM, ECM-RA, FAA, JEE, JEE-RA

책임 부서: Division of District Operations

### 교육 시설 계획 **Educational Facilities Planning**

#### I. 목적

Montgomery County Board of Education(Board) Policy FAA, *교육적 시설 계획(Educational Facilities Planning)* 적용을 위해 책정되었습니다.

부지 선정, 학교 경계, 지역적 학생 선택배치 계획, 학교 폐쇄, 합병을 포함한 수용인원 요건, 시설의 필요를 알아 교육 자본/캐피털 향상 계획(Capital Improvement Program-CIP)과 교육적 시설의 기본 계획(Master Plan) 및 비자본전략인을 위한 절차를 책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II. 배경

교육위원회 Policy FAA, *교육적 시설 계획(Educational Facilities Planning)*에 정해진 교육적 시설 계획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됩니다. -

- A. 학생의 등록 예측과 교육시설과 건물 시스템 노화의 지속적인 분석
- B. 이해 당사자의 연계와 시설 결정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 C. 주와 연방정부의 요건을 충족하고 교육위원회 Policy, ACA, *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 의 공평한 적용을 고려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있고 교육적으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결정의 프레임이 됩니다.

#### III. 정의

- A. 학교 인근(*Adjacent schools*)은 최소한, 인접해 있는 통학 거리 학교 지역입니다.
- B. 교육 자본/캐피털 예산(*Capital Budget*)은 건축 계획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일년의 예산입니다.
- C. 교육 자본/캐피털 향상 프로그램(*Capital Improvements Program-CIP*)은 자본증가를 위한 6년간의 종합적 지출 계획입니다. 교육 자본 개선/캐피털 프로그램(CIP)은 취득, 계획, 건설, 카운티 전체의 구조적 대체 프로젝트와 주요 교육 자산 프로젝트를 포함한 공립학교 시설의 유지에 중점을 둡니다. CIP는 매 훌수 연도에 시작하여 6년 동안 유지되는 격년제의 진행 절차를 통하여 평가되고 승인됩니다. 짹수 연도 재정인 6년 CIP 기간의 두 번째 연도에는 필요에 따라 수정조항을 고려합니다.
- D. 시민 그룹은 시민, 집 주인, 이웃이나 시민 연합, Maryland-National Capital Park and Planning Commission (M-NCPPC) 또는 Montgomery Regional Service Centers. 메릴랜드-전국 공원과 몽고메리 지역 서비스 센터입니다.
- E. 클러스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포함한 같은 고등학교에 속하는 지리적인 학교 그룹입니다. 경우에 따라, MCPS 의 초등학교는 여러 중학교로 나누어서 배치되며, 어떤 중학교는 하나 이상의 학군의 여러 고등학교로 나누어 배치됩니다.
- F. 컨소시엄(*Consortium*)은 근접한 고등학교나 중학교들 중 특정한 교습이나 교습 강점을 가진 학교를 선택하여 진학할 수 있도록 그룹화한 것입니다.
- G. 시설 디자인(*Facility design*)학교 시설의 건축을 위한 모든 계획과 디자인의 진행과정을 포함합니다. 진행의 순서에 따른 시설 디자인의 순서적으로 중요한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적 사용 목적에 대한 설명(*Educational specifications*)은 교습에 필요한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설계자의 빌딩 설계과 디자인 개발에 가이드가 됩니다.
  2. 실행 가능성 연구(*Feasibility study*)는 구체적인 시설 디자인 계발을 하지 않고, 프로젝트의 범위와 예상 경비를 결정합니다.
  3. 기본 설계(*Schematic design*)는 처음 단계의 일부로 평가하고 개발한 개념을 학교에 대한 예비계획으로 디자인하는 단계입니다.

4. 예비 계획(Preliminary plan)에서 대체적 범위와 규모, 기능적 관계, 교통의 흐름과 프로젝트 구성요소의 비용을 정합니다. 개념적 디자인은 계획하는 시설 향상에 대한 명확하고 종합적인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이에는 내, 외부 공간의 개념적 구조, 내, 외부 자재의 사용, 구조 시스템, 기계 시스템, 상하수도 시스템, 전기 시스템에 관한 선택이 포함됩니다. 비 계획은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위해 제출됩니다.
5. 디자인 개발은 디자인 절차의 단계로 설계를 수정하고 기계, 전기, 배관 시스템을 포함한 내부구조를 개발하는 건축 계획을 면밀화하고 개선해 줍니다.
6. 건축 문서는 시설 건축을 위한 계약서로써 사용될 건축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제공하는 설계도와 설명서를 제공합니다.

H. 지리적 학생 선택 분할 계획 학생이 프로그램이나 강조학습에 의거하여 선호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식별. 지리적 지역은 학생이 어떤 기준에 의하여 입학이 보장될 수도 있는 "베이스 지역"이나 각 학교에 베이스 지역이 없는 하나의 통합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I. *Parent Teacher (Student) Associations (PT(S)As)* 부모교사협회는 the Montgomery County Council of Parent Teacher Associations, Inc. (MCCPTA) 몽고메리카운티 이사회 부모교사협회의 멤버입니다. PT(S)A가 없을 경우, PT(S)A 대신, 학교의 부모/후견인, 교사, 학생 협회.

J. 이해 당사자의 참여(Stakeholder Engagement) 와 교육위원회 Policy FAA, *Educational Facilities Planning*, 의 목표는 Board Policy ABA, *Community Engagement*, 및 Board Policy FAA, *Educational Facilities Planning*에 따라 폭넓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인 학부모/후견인, 학생, 교직원, 커뮤니티 일원과 기관, 지역 정부 기관을 포함한 그러나 이에 제한되지 않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시설 계획 옵션에 영향을 주는 교육감과 교육 위원회의 정보에 관한 의견제시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IV. 시설 계획 분석

시설 계획 절차는 다음과 함께 시작됩니다:

##### A. 학생 등록 예측

1. 등록 예상 학생 수는 카운티의 인구예상 계획부와 협력하고 그밖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개발합니다.
2. 매년 가을 각 학교는 6 년간의 등록 학생 수 변화를 예측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후의 10 년과 15 년까지 예측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장기적 편성을 분석하고 초등학교는 클러스터와 컨소시엄 편성을 분석합니다.
3. 매해 4 월까지, 다음 해의 등록 학생 수를 예상하여 서비스 지역과 프로그램의 변화 또는 직원배당을 결정하고 수정하도록 합니다.
4. 사용된 등록 예상 방법은 CIP 와 기본계획 서류의 부록에 나와 있습니다.
5. **선호하는 등록학생** 수는 학교에 진학 중인 모든 학생을 포함합니다.
  - a) 선호하는 학교 당 학생 등록 분포는-
    - (1) 초등학교는 450에서 750 까지,
    - (2) 중학교는 750에서 1,200 까지,
    - (3) 고등학교는 1,600에서 2,400 까지.
    - (4) 특수프로그램이나 대안프로그램 센터의 등록수는 위의 범위와 다르며 일반적으로 더 낮은 수입니다.
  - b) 선호하는 등록 학생 수는 새 학교를 계획하거나 기존 학교에 변화를 줄 때 고려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선호하는 등록학생 수의 범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6. **학교의 인구통계적 프로필과 시설 프로필**
  - a) 학교의 인구통계적 프로필은 학생 인구의 인종/민족, 급식비의 무료 또는 할인 여부(FARMS), 영어 언어능력 개발(English Language Development (ELD) 프로그램, 학생의 이동수를 포함합니다.
  - b) 시설 프로필은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교실과 시설의 넓이,

개설된 해, 공원과의 인접여부, 이사할 수 있는 교실의 수가 포함됩니다.

#### B. 교육적 프로그램의 요건

1. Division of Facilities Management 의 MCPS 교직원은 교육 프로그램의 시설 요건을 알기 위해 Division of School Leadership and Improvement 및 Division of Teaching and Learning 교육 프로그램 교직원과 함께 긴밀하게 일하게 됩니다.
2. 기획한 프로그램 요건에는 학생 수의 변화, 기존하거나 새로운 혹은 제안되어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변화와 같은 다른 요인을 고려합니다.

#### C. 프로그램 수용력의 계산

1. 프로그램의 수용력은 시설의 교육프로그램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의 수를 말합니다. MCPS 프로그램의 수용력은 교습할 수 있는 교습 스테이션의 수와 각 학년과 프로그램의 학생과 교실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고 산출합니다.
2. 학생과 반의 비율은 매년의 행정 예산에 따라 결정되는 직원비율과는 달릅니다.
3. 교육위원회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한, 프로그램 수용력과 학생과 반 비율에 연관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과 반 비율 지침

수준	학생과 교실 비율
헤드스타트와 프리킨더가든	40:1 (하루에 두반)
헤드스타트와 프리킨더가든	20:1 (하루에 한반)
유치원	22:1
학생 수가 적은유치원	18:1
학생 수가 적은 1 학년, 2 학년	18:1
초등학교 1-5 학년	23:1
6-18 학년 중학교	25:1 <sup>a</sup>
9-12 학년 고등학교	25:1 <sup>b</sup>

특수교육, ELD, 대안 프로그램

“c”를 보세요.

- a) 중학교 프로그램의 수용력은 스케줄의 제약으로 조정됩니다. 일반 교실의 수용수인 25 곱하기 .85 는 중학교 시설의 최적 사용을 반영합니다(교실당 21.25 학생 수).
- b) 고등학교 프로그램의 수용력은 스케줄의 제약으로 조정됩니다. 일반 교실의 수용수인 25 곱하기 0.90는 고등학교 시설의 최적 사용을 반영합니다(교실당 22.5 학생 수).
- c) 특수교육, ELD, 대안 프로그램과 그 밖의 특별 프로그램은 위의 교실비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D. 시설 사용(*Facility utilization*)은 프로그램 수용력, 주 수용 비율, 선호하는 등록 분포와 비교한 현재와 예상하는 등록을 분석하여 제안합니다.

1. 시설 활용 비율이 80% 미만일 경우, 학교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시설 활용 비율이 100% 이상일 경우, 학교를 과잉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위원회의 특별한 결정이 없는 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시설 수용력의 80에서 100 퍼센트 안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 a) 과잉된 사용의 경우, 영구적 공간의 장기적인 필요에 대한 심사가 새 건축을 계획하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 b) 사용 미달일 경우에는 등록에 대한 장기적인 예측을 해서 심사합니다.
4. 영구적 시설이 준비될 때까지 임시로 이동식 교실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5. 이동식 교실은 학교 내의 탁아 프로그램이나 다른 보조적인 필요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동식 교실은 다른 MCPS 교실의 건강과 안전의 기준과 유사해야 합니다.

E. *State-rated Capacity (SRC)* 주 평가 수용력은 학생과 교실 비율과 학교의 교습 스테이션 수의 기준에 따라 메릴랜드 주가 정하는 적정 학생 수입니다. SRC는 주가 교육 자본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 능력을 결정하는데 사용합니다. SRCs는 학교의 CIP 와 기본 계획의 부록에 나와 있습니다.

F. 학교 사이즈는 완전한 교습 프로그램을 위한 에이커 수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등학교—교습 프로그램에 적당하고 대지 요건에도 맞는 7.5 에이커 선호. 7.5 에이커 기준은 이상적 평지를 말하며, 대지의 모양이나 인접 지역의 제한, 지역적으로 가능한 부지 크기의 제한, 인구밀도, 계획된 고려점 등에 따라 사이즈는 다를 수 있습니다.
2. 중학교—교습 프로그램에 적당하고 대지 요건에도 맞는 15.5 에이커 선호. 15.5 에이커 기준은 이상적 평지를 말하며, 대지의 모양이나 인접 지역의 제한, 지역적으로 가능한 부지 크기의 제한, 인구밀도, 계획된 고려점 등에 따라 사이즈는 다를 수 있습니다.
3. 고등학교——교습프로그램에 적당하고 대지 요건에도 맞는 35 에이커 선호. 35 에이커 기준은 이상적 평지를 말하며, 대지의 모양이나 인접 지역의 제한, 지역적으로 가능한 부지 크기의 제한, 인구밀도, 계획된 고려점 등에 따라 사이즈는 다를 수 있습니다.

G. The 시설 상태 지수(*Facility Condition Index-FCI*)는 지붕, 벽, 창문, 난방, 환기, 공조(HVAC) 등 시설의 주요 건물 시스템의 수명과 가치가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정량화합니다. FCI는 건물의 전체적 상태 평가를 위해 사용됩니다. 이 중 한 요소는 학습과 업무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MCPS는 2025-2026 학사연도에 FCI 기준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기준 학사연도를 마치면, 주기적으로 FCI 갱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갱신은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 V. 클러스터/학군 의견

A. 클러스터/학군 대표는 매해 6 월에 지역 학부모회(PT(S)A) 리더십, 교장,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자녀 학교에 대한 시설 관련 우려사항, 우선순위, 또는 제안 사항을 교육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B. 학군 의견(cluster comments)은 교육감이 자본개선계획(Capital Improvements Program-CIP)을 수립할 때 포함되는 시설 관련 권고사항 개발 과정에서

고려됩니다.

## VI. 시설 계획 결정의 틀

A. 매해, 새 학생 등록 예상을 개발하고 위에 책정된 기타의 분석을 마친 후에 학군 내의 의견을 수렴하여 MCPS 직원은 변화하는 시설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자본 개선 프로그램(CIP) 의사 결정 체계는 자원의 공평하고 효과적인 투자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통합합니다. 이러한 CIP 기준들은 교육구 시스템 전반에 걸친 자본 투자에 대해 정보에 입각하고, 투명하며,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한 틀을 제공합니다. 핵심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시설 상태 지수(The Facility Condition Index): 위에서 정의된 건물의 물리적 상태 및 주요 시스템의 상태
2. 교육적 적절성(Educational Adequacy): 시설이 현대적인 교육 관행 및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얼마나 잘 지원하는지
3. 향상된 학생 수요(Enhanced Student Needs): 특수 프로그램 및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여 학생 집단의 고유한 요구 사항
4. 시설 활용도(Facility Utilization): 프로그램 수용 능력과 대비한 학생 등록 예측

B.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직원은 교육위원회 정책 FAA, *교육시설계획(Educational Facilities Planning)*에 명시된 시설 수요 및 수용 능력 요구 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시설의 필요와 수용 요건에의 옵션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카운티 전체 구조적 재배치 프로젝트는 히터, 환기시스템, 에어컨디션, 기계 시스템, 지붕, 많은 다른 건물과 낙후시설의 교환 등을 통해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유효 사용 상태로 연장해야 합니다.
2. 주요 교육 시설 프로젝트에는 수용인원을 늘리기 위한 특정한 해당시설 프로젝트; 개조, 적용, 변경, 용도 변경, 현존하는 시설의 재배치; 적절한 경우, 다른 시설의 현존하는 공간의 재활용 또는 개선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 옵션은 또한 새 시설 건축 또는 기존 시설의 증축이 포함됩니다.

B. 시설의 필요와 수용 요건에 따른 옵션은 적절한 경우, 재정의 증가나 시설의

증축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용 인원 미만인 학교로의 등록 수 증원 그리고/또는 수용인원 초과인 학교에서의 이동을 통한 수용 인원 조정 (다음을 포함 그러나 이에 제한되지 않음) —

1. 학군의 변경 또는
2. 지리적 학생 선택 배정 계획; 그리고/또는
3. 학교 폐쇄와 합병

C. 의사결정의 틀은 교육감이 명시하는 건축가의 선택에 대한 고려, 시설 디자인, 기타 시설에 관련된 문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VII. 교육 자본/캐피털 향상 프로그램

- A. 매해 가을, 교육감은 연 건축 예산과 6 년의 CIP 나 이 전의 CIP에 대한 개정의 추천을 발표합니다.
- B. 추가로, 부지 선정, 학교 경계선, 지리적 학생 선택 할 계획, 학교 폐쇄와 합병을 위한 추천과 일반의 검토를 위해 더 시간이 필요한 교육감의 시설 계획에 관련된 추천을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 C. CIP 6 개년 계획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위원회 평가와 결정에 대한 기준:
    - a) 선호하는 등록 학생 수의 범위
    - b) 프로그램 수용력과 시설 사용 추정
    - c) 대지 면적
  2. 학생 등록 예상 방법에의 근거 정보
  3. 현재 학생 등록 수, 학생 인구통계 프로필, 시설 프로필
  4. 프로그램 수용 능력과 시설 사용 분석
  5.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다음 6 년 간과 중학교와 고등학교 10 년째 15 년 장기 프로젝트를 위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등록의 예측

6. 추천하는 행동은 학교 수용의 변경, 새 시설, 주요 교육 자본/캐피털 프로젝트, 프로그램 장소 그리고/또는 학교 서비스 지역의 변경 등
7. 항목, 특정 학교의 주요 교육 자본/캐피털 프로젝트, CIP 와 메스터 플랜에 명시된 새 시설의 교육구 전체 프로젝트 스케줄
8. 교육감의 신축예산 추천 적용에 대한 개요

D. 교육감이 CIP 에 대한 보조 정보를 발표하는 것을 추천한다면 더 많은 정보가 발표됩니다.

E. 교육감이 추천한 CIP 는 MCPS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CIP 서류는 위원회 위원, 위원회 직원, MCPS 행정직원, MCCPTA 회장, 지역 MCCPTA 의 부회장과 클러스터 코디네이터에게 제공됩니다. 더불어, CIP 발표와 온라인 이용에 대한 공고를 교장들, PT(S)A 지도자들, 지방자치단체, 시민 단체에게 보냅니다. 이 공고는 위원회 스케줄, 공공의 청문회, CIP 의 진행과정을 포함합니다.

F. CIP 에 대한 위원회 일정의 검토와 결정은 매년 11 월 초 중순 경의 1 주일 이상의 청문회를 거칩니다. (공공의 청문회 진행은 XI.B.부분을 연중 캘린더는 XII 부분을 보십시오.)

G. 교육감의 CIP 에 대한 계류계획 문제와/나 개정은 2 월 중순에 결정됩니다. 이 항목에의 교육위원회의 일정은 한 번 이상의 회의와 한 번 이상의 청문회가 2 월/3 월에 있으며 결정은 4 월에 있습니다. 계류 중의 계획 일정은 교육감이 이해 당사자의 참여가 더 오래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수정될 수 있습니다.

H. 교육위원회가 특별한 상황이라고 결정한 경우, 교육감은 CIP, 시설 계획 활동, 장소 선정, 학교 경계, 지리적 학생선택 계획 또는 학교 폐쇄 그리고/또는 합병에 대한 대안의 일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I. 검토와 교육위원회의 결정 후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CIP 는 모든 교육 자본/건축의 공식적 계획서류(PDFs)를 포함하여 Montgomery County Council(County Council)과 Montgomery County Executive 에게 심의와 카운티 의회의 결정을 위해 제출됩니다. 교육위원회가 요청한 CIP 는 정보제공을

위해 M-NCPPC 에 보내집니다.

- J. 카운티 행정부의 추천은 카운티 전체의 CIP 에 포함시키기 위해 카운티 의회로 1 월 15 일에 보내집니다. 카운티 의회가 CIP 검토와 시행을 검토하는 기간은 2 월부터 5 월입니다.
- K. 카운티 의회는 격년제인 6 년 CIP 와 CIP 에 대한 개정을 5 월 하순에 인가했습니다.

### VIII. 교육 시설 기본 계획(메스터 플랜)

- A. 매년 7 월, 교육감은 모든 카운티 의회가 승인한 교육 자본/캐피털과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비교육 자본 전략의 요약을 발표하여 수용 요건과 시설의 필요를 알립니다. 이 서류, 즉 교육 시설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이하 마스터 플랜이라 칭함)은 주 공립학교 건설 프로그램의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것입니다.
  - 1. 메스터 플랜은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수용력 요건과 시설의 필요에 따라 카운티 의회가 예산 승인한 계획된 모든 교육 자본/캐피털 계획과 비 교육자본 전략을 포함합니다.
  - 2. CIP 와 유사한 기본 계획은 다음을 포함함:
    - a) 다음과 같은 기준:
      - (1) 선호하는 등록 학생 수의 범위
      - (2) 프로그램의 학생 수용 능력과 시설 사용 추정
      - (3) 대지 면적
    - b) 등록 예상의 방법에 대한 근거 정보
    - c) 현재 학생 등록 수, 학생 인구통계 프로필, 시설 프로필
    - d) 프로그램 수용력과 시설 사용 추정
    - e)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다음 6 년 간과 중학교와 고등학교 10 년째 15 년 장기 프로젝트를 위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록의 예측 이 정보는 봄에 프로젝트를 1 년

갱신한 작년 가을에 작성한 프로젝트와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경계선 변화, 지리적 학생 선택 분할 계획, 학교 폐쇄와/또는 합병이나 다른 변화를 반영합니다.

f) 카운티 의회는 스케줄, 예상비용, 자본 근원을 포함하는 모든 신축 계획 PDF를 승인합니다.

## IX. 장기 계획

A. MCPS는 장기적인 안목으로(예: 6년 CIP 간격 이상의 경우 등)예상 계획 프레임을 CIP의 개발을 알리는 데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MCPS가 교육방법을 개발하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학생 수의 변화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을 도모하며 비전형적인 시설의 사용과 기타의 적절한 방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활용합니다.

B. 이 장기 계획 예산 계획 프레임은 시설에 영향을 주는 4개의 증가 관리 예상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지역과 학군 레벨에서의 증가에 대한 관리를 살펴봅니다.

1. 등록 증가가 높음
2. 등록 증가가 중간/낮음
3. 등록 증가 없음
4. 등록 감퇴

C. 모든 시나리오는 학교 또는 학교들이 앞으로 과잉 사용 또는 이용 부족이 되거나 과잉 사용 또는 이용 부족이 될 수 있는 수준인지를 분석하고 결정합니다. 이 분석을 통해 나오게 되는 추천하는 장기적 접근 옵션은 다음을 포함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제공, 장소, 프로그램의 수의 변경; 등록과 반 학생 수; 학년 수준의 구성; 또는 메스터 스케줄
2. 건물 노화에의 추가사항
3. 전통적인 부지 또는 기존의 부지의 비전형적 사용에의 고려

D. 장기 시설 계획 관련 문제와 전략에 관해 Montgomery 커뮤니티 멤버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교육감은 시설과 계획에의 6개년 CIP 계획 밖의 10-15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 커뮤니티의 비전에 관련한 다양한 폭넓은 주제에 관해 MCPS에 조언하는 시설 자문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교육감이 커뮤니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통해 Facilities Advisory Committee를 임명합니다.

**X. 특정 시설에 관련한 문제에 대한 이해 당사자 참여 절차를 위한 지침**

A. 이해 당사자 참여 가이드라인

1. 이해 당사자의 참여는 MCPS 시설 관련 계획 절차에 따른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a) 새 학교의 대지 선정
  - b) 학군
  - c) 지리적 학생 선택 분할 계획
  - d) 학교 폐쇄와 합병
  - e) 시설 디자인
  - f) 교육감이 지정한 다른 시설 관련 문제
2. 교육위원회 Policy ABA, 커뮤니티의 참여(Community Engagement)와 교육위원회 Policy FAA, 교육 시설 계획(Educational Facilities Planning)에 따라, MCPS는 Section V.A.1에 명시된 절차를 위한 직원이 개발한 시설관련 옵션의 커뮤니티에의 영향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목적으로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구하게 됩니다.
  - a) 교육감은 의견 제시의 기회를 공개 모집하여 교직원은 다음을 구합니다 -
    - (1)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
    - (2) 영향을 받는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폭넓은 대표 및
    - (3) 다양한 관점

- b) 계획 절차에서의 중요 이해관계자는 영향 받는 커뮤니티에서의 부모님/보호자/후견인, 교직원, 학생입니다. 추가 이해 관련자는 MCCPTA 대표, 지역 PT(S)As 나 기타 학부모/후견인 또는 학생 그룹; MCPS 교직원 대표들; 영향을 받게 될 지방자치단체; 지역 정부 기관; 시민 단체; 해당할 경우, 기타 전체 카운티 기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c) 교직원은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폭넓은 아웃리치를 진행합니다.
  - (1) 이해 당사자 참여 방법은 절차의 상황, 크기, 범위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 (2) 이해 당사자 참여 방법에는 교육구 전체 또는 자문 그룹, 포커스 그룹, 테스크 포스 프로젝트팀, 업무 그룹, 원탁 회의 그룹, 설문조사, 실질적 소통을 위한 회의, 계획된 공개 세션, 각 분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문제를 논하는 집단 토론회와 같은 모든 관심, 영향을 주는 단체가 협력하는 모임, 정보 제공과 교직원의 의견제시가 포함되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 (3) 이 시점에서 교육감은 MCPS 직원에게 다른 방법과 함께 또는 대신하여 공청회, 조사 또는 테크놀로지를 통한 소통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 B. 학교 경계선과 지리적 학생 선택 분할 계획을 위한 옵션 개발의 추가 지침

1. 특정 옵션을 개발하기 전, 교육감은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위하여 교육위원회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학교 경계선과/또는 지리적 학생 선택 계획의 변경의 잠재적 범위를 제시합니다.
2. 교육감은 첫째, 직접적으로 염려를 표명할 영향을 받게 될 지역을 분석한 최소단위, 그다음은 Board Policy FAA, *Educational Facilities Planning*에 책정된 네 가지 요소를 효과적으로 나타내는지를 고려한 영향을 받을 지역을 최대한으로 연장하여 고려한 다단계 절차로의 범위의 제시를 개발해야 합니다.

- a) 일반적으로 학교 경계선 변경의 범위와/또는 학교 등록에 제한적 영향을 줄 것(예: 학교 수용력 증가에 20% 미만의 추가 또는 학교 진학 지역에 소폭의 변경)으로 예상하는 교육 자본/캐피털 계획 추천에 따른 지리적 학생 선택 분할 계획은 학교가 학군 밖의 바로 인근에 위치한 학교일 경우에만 옵션 고려로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 b) 폭넓은 커뮤니티의 영향에의 영향에 따라 범위를 인근 학군 커뮤니티에 연관된 옵션으로 연장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 시설관련 범위에 관한 추천사항을 작성하기 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커뮤니티를 확인합니다.

4. 교육위원회가 학교 경계선 변경 및/또는 지리적 학생 선택 분할 계획의 변경 범위로 책정할 경우, MCPS 직원은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위해 Policy FAA, *Educational Facilities Planning*에 책정된 네 개의 요소에 따라 옵션 범위를 개발하고 이 네 가지 요소를 발전시키도록 하는 연장을 보여주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네 가지 요소는:

- a) 학생 인구의 인구통계적 성격
 

Pursuant to Board Policy FAA, 교육 시설 계획(*Educational Facilities Planning*)선택사항 분석은 영향을 받는 학교 전체 인구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고려하여 여러 방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Board Policy ACD, *Quality Integrated Education*에 따라 선택사항에는 영향을 받는 학교가 더 다양성 있는 학생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요 고려사항이 다른 요소로도 정당화되지 않는 영향을 받는 지역 학교 간의 지리적 특징에서의 상당한 격차임을 의미합니다. 인구 데이터가 보이는 다양한 선택사항의 영향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학생의 인종/민족 구성, 영어 학습자의 수준, 기타 신뢰할만한 인구지표, 특수 교육 프로그램 학생 흡선은 지리적 데이터 항목 간, 사이의 교차로를 고려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 b) 지리적 요소

자녀 학교에의 가족 참여에서 MCPS 가 강조하는 부분에 따르면, 선택사항은 의무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한, 지역적 근접성과 접합, 교통과 수송 패턴(공공 교통 포함) 그리고 지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분석의 일부로, 학교로의 도보 이용과 이동 거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선택사항은 학군 안의 고등학교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 위치한 다른 학교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c) 학교 배치의 장기적 안정성

선택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배치의 결과를 나아야 합니다. 학교 재배당은 최근의 경계선과 지리적 학생 선택 분할 계획의 변화와/또는 학생에게 영향을 준 학교의 폐쇄와 합병을 고려해야 합니다.

d) 시설의 활용

경계선 변화와 지리적 학생 선택 분할 계획은 가능하다면 장기적인 경우, 80 퍼센트에서 100 퍼센트 시설 사용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클러스터 이상이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커뮤니티의 접합 패턴의 결과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경우, 가장 가능한 시설 계획일 수 있습니다. 계획은 가능한 한 재정적으로 건축과 운영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5. 이해 당사자 참여 단계의 결론에 따라 MCPS 직원은 교육감에게 이해 당사자 참여 절차 활용, 직원이 개발한 옵션,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 이제한되지 않고 포함된 보고서를 준비하게 됩니다.
6. 더불어, 교육감은 적절한 경우, PT(S)A 의 성명서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7.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개발할 때, 교육감은 위 Section X.B.2 and X.B.4 에 명시한 요소를 촉진하는 추천인지 각 추천에 합리적인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각 요소들을 고려는 하지만 모든 추천의 개별적인 모든 요소가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8. 이 가이드라인은 또한 적절한 경우, 교육감이 지정한 다른 시설 관련 문제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C. 새 학교 부지 옵션 개발에 관한 추가 지침

현정되거나 구매 또는 위원회가 소유하는 부지를 포함하여 새 학교의 부지를 검토할 때, Board Policy FAA, *Educational Facilities Planning*에 책정된 것에 다음 요소를 추가로 고려합니다.

1. 현재와 미래의 학생인구와 현존의 학교에 관련한 지리적 장소
2. 대지의 규모
3. 지형적 그리고 다른 환경적 상태
4. 유틸리티 사용 가능성
5. 대지의 물리적 상태
6. 인수 가능성과 시기
7. 사적 소유지의 인수 비용

### D. 시설 디자인

교육 시설의 디자인은 학교장의 환경 지킴이 정신에 따라 그리고 현재 교육 프로그램과 미래 예상되는 프로그램을 고려한 건강하고 안전이 보장되고 보호되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새 학교 또는 기존 학교의 증축 절차의 중요 단계로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추구해야 합니다.

1. 교육적 사용 목적에 대한 설명(Educational specifications)은 교습에 필요한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설계자의 빌딩 설계과 디자인 개발에 가이드가 됩니다. 예정된 프로젝트의 교육 특성은 MCPS의 계획 담당 직원이 교습 프로그램 직원, 영향을 받게 될 학교 학교장과 교직원과 함께 개발합니다.
2. 교육적 특성을 평가하고 이를 최초 디자인때 선발된 건축자들이 디자인 옵션을 개발합니다.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는 다음을 통합니다:
  - a) MCPS 직원은 교육 자본/캐피털 프로젝트 시설 디자인에 관하여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폭넓은 아웃리치를 진행합니다.

- b) 시민단체의 대표, 지방 자치제, 카운티 정부(Montgomery County Planning Department and Montgomery County Parks Department 포함) 그리고 인접 주민은 새 학교와 추가 건설 또는 기존 학교의 주요 교육 자본/캐피털 프로젝트에의 의견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초기 디자인을 포함한 초기 계획은 교육위원회에 이 승인을 위해 제출합니다.

#### E. 학교 폐쇄와 합병

위의 항목, section X.B.4에 책정된 요소에 추가로 Maryland 법은 학교 폐쇄와 합병에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XI. 교육감 추천에의 교육위원회의 행동

- A. 교육위원회는 위의 Section VII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교육감의 추천을 한번 이상의 업무회의를 통하여 검토합니다.
  1. 위원회는 다수의 투표에 의하여 부지 선정, 학교 경계선 지리적 학생 선택 분할 계획의 대체안, 또는 학교 폐쇄와 합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학교 장학관의 추천에 대한 상당한 수정은 위원회 멤버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전체적으로든 학교나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감의 추천에 대한 수정은 상당한 수정으로 간주 합니다. 교육위원회가 제시할 대체안은 Section G of Board Policy FAA, *교육시설 계획(Educational Facilities Planning)*에 명시된 요소 중 하나 이상을 따르게 됩니다.
  3. 학교 장학관의 추천과 위원회가 요청한 대안은 위원회의 최종 결정전에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위원회의 업무회의중 대안이 결정될 경우 업무회의 후에 공공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4. 위원회는 공공의 검토를 거친 학교 장학관의 추천이나 위원회의 대안에 많은 변화를 주지 않는 최소한의 수정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안은 적절한 공고와 영향받을 지역의 의견 수렴의 기회를 주지 않고 위원회의 업무 회의 후에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B. 교육위원회 공개 공청회 과정

1. 공청회는 교육감의 CIP 추천 발표 후에 있습니다. 더불어, 공청회는 부지 선정, 경계선 변경, 지리적 학생 선택 분할 계획 또는 학교의 폐쇄와 합병의 추진 전에 있습니다.
  - a) 청문회는 교육감의 건축 예산과 6 년 CIP 추천 발표 후인 11 월에 있습니다.
  - b)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교육감의 추천에 대한 청문회가 2 월 말 또는 3 월에 있을 수 있습니다.
  - c) 공청회는 위원회가 특별한 상황이라고 결정하고 교육감이 다른 그리고/또는 최단기 스케줄을 개발한다면 연중 다른 시기에 열릴 수 있습니다.
2. 다른 수단의 참여와 함께 지역 주민은 교육감과 위원회에게 서면으로의 의견제시, 공개 의견제시, 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습니다.
3. 시민그룹, 카운티 정부기관과 해당 시정부 기관 그리고 선출 공무원은 청문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4. 지역 PT(S)A 회장과 상의하에, MCCPTA 학군별 코디네이터는 학군 내 학교에의 해당 공청회의 의견제시를 예약하고 코디네이트하며, 예정된 공청회 의견제시 때 다양한 의견을 제공하도록 장려합니다. 각 클러스터의 의견수렴 시간은 PT(S)A 기관 부서("쿼드 클러스터") 그리고/또는 컨소시엄에서 스케줄을 정하고 계획합니다.
5. 서면으로의 의견은 언제나 나눌 수 있으나 위원회의 결정 48 시간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6. 위원회 사무실은 청문회에서 의견을 나누길 원하는 개인을 스케줄해야 합니다.
  - a) *Board of Education Handbook* 또는 CIP 공청회, 학생, 지방

자치제, MCCPTA 는 먼저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지며 다음은 PT(S)As 그리고 개인과 시민 그리고 카운티 기관은 선착순으로 기회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b) 선출 공무원은 어젠다에서 자신의 선택한 시간에 배치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 c) 교육위원회 공청회 안내에서 특정하지 않는 한, 기관, 지방자치제, 선출의원은 교육위원회 청문에서의 의견제시 시간은 5 분으로 제한합니다.

## XII. 학사일정

시설 계획은 Montgomery 카운티의 격년제 CIP에 따라 진행되며 매년 공휴일과 다른 변화 요소에 맞추어 조정된 일정에 따릅니다.

MCPS 직원이 MCCPTA, 지역 주회장들, 클러스터 담당자, PT(S)A 대표와 만나 승인된 CIP 와 앞으로의 CIP 또는 CIP 개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합니다.	여름
카운티 의회가 경제성에 기준한 새 CIP 주기 지출 경제적 지침을 승인합니다.	홀수 연도의 10 월 초순
MCPS 직원이 등록 양상과 계획 문제를 위원회에 보고 합니다.	가을
교육감은 부지 선정, 학교 경계선 변경, 지리적 학생 선택 분할 계획, 학교 폐쇄 및/또는 합병 또는 일반의 검토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기타 시설 관련 문제를 발표하고 추천 사항을 위원회에 보냅니다.	가을
교육감이 연 건축 비용과 6 년 CIP 나 CIP 개정에 대한 추천을 위원회에 발표하고 소개합니다. 위원회는 이 발표 시 업무회의를 통하여 위원들의 대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가을
교육위원회는 CIP에 관한 한 번 이상의 업무 회의를 갖고 교육감이 추천한 부지 선정, 학교 경계선 변경, 지리적 학생 선택 분할 계획의 변화와 학교 폐쇄 및/또는 합병, 다른 시설 관련 문제에 대한 대안을 고려합니다.	11 월 초, 중순
교육위원회는 부지 선정, 학교 경계선 변경, 지리적 학생 선택 분할	11 월 중순

계획의 변화와 학교 폐쇄 및/또는 합병, 다른 시설 관련 문제의 추천 CIP에 대해 한 번 이상의 청문회를 갖습니다. 업무회의 중에 위원회가 확인한 대안에 대해서 업무회의 후에는 대안에 대한 공공의 의견 수렴을 위해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교육 자본/캐피털 건축 비용, CIP, 개정과 부지 선정, 학교 경계선 변경, 지리적 학생 선택 분할 계획의 변화와 학교 폐쇄 및/또는 합병, 다른 시설 관련 문제를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11 월 중순에서 하순
카운티 행정부와 카운티 의회가 평가를 위해 위원회가 요청한 교육 자본/캐피털 비용과 CIP를 받습니다.	12 월 1 일
카운티 행정부가 추천하는 교육 자본/캐피털 비용과 CIP 개정을 카운티 의회로 넘깁니다.	1 월 15 일
카운티 의회는 CIP에 대한 청문회를 갖습니다.	2 월-3 월
카운티 의회는 위원회가 요청한 교육 자본/캐피털 비용과 CIP를 검토합니다.	3 월 -4 월
필요한 경우, 계류되었던 학교 교육감의 부지 선정, 학교 경계선 변경, 지리적 학생 선택 분할 계획의 변화와 학교 폐쇄 및/또는 합병, 그리고/ 또는 다른 시설 문제, 그리고/또는 CIP 추천에 대한 개정이 위원회의 검토를 위해 발표됩니다.	2 월 중순
교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부지 선정, 학교 경계선 변경, 지리적 학생 선택 분할 계획의 변화와 학교 폐쇄 및/또는 합병, 다른 시설 관련 문제에 관한 1 회 이상의 업무 회의를 개최하여 대체안을 모색합니다.	2 월 초/3 월 중순*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나 다른 대안 방법을 찾으면 한 번 이상의 청문회를 갖습니다.	2 월 말
필요한 경우, CIP 추천과/또는 부지 선정, 학교 경계선 변경, 지리적 학생 선택 분할 계획의 변화와 학교 폐쇄 및/또는 합병, 다른 시설 관련 문제를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April
카운티 위원회가 6년 교육 자본/캐피털 예산과 CIP를 승인합니다.	5 월 중순
클러스터의 PT(S)A 대표는 CIP 와 CIP 개정으로 자 학교가 받을	6 월

영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학교 장학관에게 보냅니다.	
교육감은 현재까지의 모든 결정의 영향을 받는 학교(메스터 플랜)와 미래의 필요에 대한 개요를 발표해야 합니다.	7 월

\*필요할 경우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위한 시간의 연장을 위하여 계획 일정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자료:**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13A.01.05.07 and §13A.02.09.01-.03; Charter of Montgomery County, Maryland, Section 305; Montgomery County Code, Chapter 20, Article X, §§20-55 through 20-58*

**규정 변경사:** 2005년 6월 1일 임시 규정; 2006년 3월 21일 개정; 2006년 10월 17일 개정; 2008년 6월 8일 개정; 2015년 6월 6일 개정; 2017년 10월 11일 개정; 2019년 5월 2일 개정; 2025년 10월 8일 개정

# MCPS 차별금지 성명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인종, 민족, 피부색, 혈통, 출신국, 국적, 종교, 이민상태, 성,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성 지향, 가족 형태/부모 상태, 결혼 상태, 나이, 능력 상태(인지, 사회/정서, 신체), 빈곤, 사회경제적 상태, 언어, 또는 합법적이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성향 또는 소속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모두를 위한 평등, 포용, 수용을 만들고 육성하고 촉진하려는 우리 공동체의 오랜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교육위원회는 혐오를 조장하고 학교 또는 교육구 운영 또는 활동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언어의 사용 및/또는 이미지와 기호, 상징의 표시를 금지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정책 ACA, 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을 봅시다. 이 정책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하며 특히, 개인의 실제 또는 여겨지는 인적 특성으로 교육적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위원회의 신념을 단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또한, 공평성이 암묵적 편향, 부당한 이질적 영향을 미치는 관행, 정당화되지 않은 다른 관행, 교육과 고용의 기회의 평등을 방해하는 구조적, 제도적 장벽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MCPS는 또한,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와 다른 지정된 청소년 그룹에 동등한 접근권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모든 공공 및 공공 자금 지원 학교와 학교 프로그램이 이를 준수하여 운영하는 Maryland주 정책입니다.

- (1) 1964년 연방민권법 제6호(Title VI of the federal Civil Rights Act of 1964); 및
- (2) Title 26, Subtitle 7 of the Education Article of the Maryland Code에는 공공 및 공공 자금을 지원받는 학교와 프로그램은 다음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a)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출신국, 혼인상태, 성적지향, 성정체성 또는 장애에 근거한 재학생, 예비학생 또는 재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차별.
  - (b) 개인의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 연령, 출신국, 결혼상태, 성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장애로 예비 학생의 등록 거부, 재학생의 퇴학, 재학생, 예비 학생 또는 재학생 또는 예비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특권 박탈; 또는
  - (c) 불만의 결과에 관계없이 프로그램 또는 학교가 학생을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징계, 처벌을 발동하거나 기타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

연락처와 연방, 주, 지역 법에 있는 요건은 이 서류와 갱신판 사이에 변경될 수 있으며, 이 서류의 내용과 참조를 대체하게 됩니다. 갱신된 최신 정보는 다음 온라인판을 참조합시다. [www.montgomeryschoolsmd.org/info/nondiscrimination](http://www.montgomeryschoolsmd.org/info/nondiscrimination).

MCPS 학생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MCPS 교직원*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Director of Student Conduct and Appeals Division of Equity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850 Hungerford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a href="mailto:SWC@mcpssmd.org">SWC@mcpssmd.org</a>	Human Resource Compliance Officer Division of Human Resources and Talent Manage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15 West Gude Drive, Suite B4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a href="mailto:DCI@mcpssmd.org">DCI@mcpssmd.org</a>
1973년 504 장애법(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에 따라 조정을 요청한 학생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라 조정을 요청한 학생
Section 504 Coordinator Division of Specialized Support Services, Department of School Counseling 850 Hungerford Drive, Room 170, Rockville, MD 20850 240-987-8031   <a href="mailto:504@mcpssmd.org">504@mcpssmd.org</a>	ADA Compliance Coordinator Division of Human Resources and Talent Manage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15 West Gude Drive, Suite B4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a href="mailto:DCI@mcpssmd.org">DCI@mcpssmd.org</a>
학생 또는 교직원***에의 성희롱 등, Title IX에 해당하는 성차별에 관한 조사나 불평사항	
Title IX Coordinator Division of Equity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Department of Student Conduct and Appeals 850 Hungerford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a href="mailto:TitleIX@mcpssmd.org">TitleIX@mcpssmd.org</a>	

\*본 통지는 개정된 연방 초등 및 중고등 교육법을 준수합니다.

\*\*본 통지는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Section 13A.01.07.을 준수합니다.

\*\*\*차별에 관련된 민원은 다음과 같이 다른 기관에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Baltimore Field Office, GH Fallon Federal Building, 31 Hopkins Plaza, Suite 1432, Baltimore, MD 21201, 1-800-669-4000, 1-800-669-6820 (TTY); Maryland Commission on Civil Rights (MCCR), William Donald Schaefer Tower, 6 Saint Paul Street, Suite 900, Baltimore, MD 21202, 410-767-8600, 1-800-637-6247, [mccr@maryland.gov](mailto:mccr@maryland.gov); Agency Equity Officer, Office of Equity Assurance and Compliance, Office of the Deputy State Superintendent of Operations,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200 West Baltimore Street, Baltimore, MD 21201-2595, [oeac.msde@maryland.gov](mailto:oeac.msde@maryland.gov); 또는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OCR), 61 Forsyth St. S.W., Suite 19T10, Atlanta, GA 30303, 404-974-9406 and TDD: 800-877-8339, [OCR.Atlanta@ed.gov](mailto:OCR.Atlanta@ed.gov), 1-800-421-3481, 1-800-877-8339 (TDD), [OCR@ed.gov](mailto:OCR@ed.gov), 또는 [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안내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와 미국 장애인 복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른 대체 형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CPS Office of Communications, 전화번호 240-740-2837, 1-800-735-2258 (Maryland Relay) 또는, [PIO@mcpssmd.org](mailto:PIO@mcpssmd.org)로 연락하여 요청합시다. 수화통역 및 기타 특수 보조 등의 제반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MCPS의 Office of Interpreting Services, 240-740-1800, 301-637-2958 (VP)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smd.org](mailto:mcpsinterpretingservices@mcpssmd.org)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smd.org](mailto:MCPSInterpretingServices@mcpssmd.org)로 연락합시다.